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면서 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마약·조직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3명(5급 5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8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9조의2제1항 중 “사이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기술범죄”라 한다)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기술범죄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기술범죄 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517”을 “534”로 하고, 일반직 계 “517”을 “534”로 하며,
검찰사무관 “47”을 “51”로, 마약수사사무관 “2”를 “3”으로, 검찰주사 “81”
을 “85”로, 검찰주사보 “86”을 “88”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9”를 “18”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을 “25”로,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심리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9”로,
사무운영서기보 “50”을 “4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939”를 “7,8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39”를 “7,856”
으로 하며, 검찰사무관 “405”를 “403”으로, 검찰주사 “1,379”를 “1,365”
로, 검찰주사보 “1,792”를 “1,773”으로, 검찰서기 “1,030”을 “1,019”로, 전산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7”을 “47”로, 검찰서기보 “851”을 “840”으로, 시
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6”을 “27”로, 운전서기보 “250”을 “247”로,
사무운영서기보 “1,269”를 “1,255”로 한다.

별표 5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
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

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 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 과,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디 지털수사과 및 <u>사이버수사과</u> 를 둔다.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 ----- ----- ----- <u>사이버·기술범죄</u> <u>수사과</u>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⑤ <u>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 에 관한 사항</u>	1. <u>사이버범죄·기술유출범죄(이 하 “사이버·기술범죄”라 한 다)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 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 휘·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u>
2. <u>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 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u>	2. <u>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 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u>
3. <u>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u>	3. <u>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 내사·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u>
4. <u>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개 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4. <u>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 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u>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 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와 관련된 지도·교육·지원 에 관한 사항</u>	

리·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
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
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에 관
한 사항

8. 사이버·기술범죄 수사기법
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기술범죄 수사장비
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7</u>	<u>534</u>	+17
일반직 계	<u>517</u>	<u>534</u>	+17
·	·	·	
·	·	·	
검찰사무관	<u>47</u>	<u>51</u>	+4
·	·	·	
·	·	·	
마약수사사무관	<u>2</u>	<u>3</u>	+1
·	·	·	
·	·	·	
검찰주사	<u>81</u>	<u>85</u>	+4
·	·	·	
·	·	·	
검찰주사보	<u>86</u>	<u>88</u>	+2
·	·	·	
전산주사보 또는	<u>19</u>	<u>18</u>	-1
방송통신주사보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6</u>	<u>25</u>	+9
·	·	·	
·	·	·	
공업연구원 · 보건연구원 · 환경연구원 · 심리연구원 또는 학예연구원	<u>10</u>	<u>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0</u>	<u>49</u>	-1
·	·	·	
·	·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939</u>	<u>7,856</u>	-83
일반직 계	<u>7,939</u>	<u>7,856</u>	-83
•	•	•	
•	•	•	
검찰사무관	<u>405</u>	<u>403</u>	-2
•	•	•	
•	•	•	
검찰주사	<u>1,379</u>	<u>1,365</u>	-14
•	•	•	
•	•	•	
검찰주사보	<u>1,792</u>	<u>1,773</u>	-19
•	•	•	
•	•	•	
검찰서기	<u>1,030</u>	<u>1,019</u>	-11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57</u>	<u>47</u>	-10
•	•	•	

·	·	·	
검찰서기보	<u>851</u>	<u>840</u>	-11
·	·	·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u>26</u>	<u>27</u>	+1
·	·	·	
운전서기보	<u>250</u>	<u>247</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69</u>	<u>1,255</u>	-1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4